

□ 지방재정분석 지표별 산식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frac{(\text{세입}-\text{지출 및 순운자})}{\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통합회계	▲
	2. 실질수지비율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 결산액}} \times 100(\%)$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3. 경상수지비율	$\frac{\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통합회계	▽
	4. 관리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지방채무잔액은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통합회계	▽
	4-1. 실질채무비율	$\frac{\text{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관리채무는 4. 관리채무비율에서 사용한 BTL 지급액을 포함한 지방채무잔액을 의미함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통합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건전성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계}}{\text{환금자산}} \times 100(\%)$ ※ 환금자산: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통합회계	▽
	6. 공기업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공기업회계 (직영.공사)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영업이익: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공기업회계 (직영.공사)	▲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증감률)	8-1. 자체세입비율(%) $\frac{\text{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8-2. 자체세입증감률(%) $\frac{(\text{2015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text{2014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text{2014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 - 임시적 세외수입(220) 제외	일반회계	▲
	9.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1. 지방세징수율(%)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9-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frac{\text{2014년도 지방세징수율}}{\text{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일반회계	▲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일반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효율성		$\frac{2014\text{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10-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frac{(2014\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3\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2013\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times 100(\%)$ ※ 2014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2013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3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3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11.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11-1. 경상세외수입비율(%) $\frac{2014\text{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2013\text{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times 100(\%)$ 1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frac{(2014\text{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2013\text{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2013\text{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times 100(\%)$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일반회계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2-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frac{2014\text{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12-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frac{(2014\text{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2013\text{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2013\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times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일반회계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frac{2014\text{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2014\text{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일반회계	▲
	14.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14-1. 민간이전경비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효율성		$\frac{\text{민간이전경비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14-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frac{(\text{2014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text{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text{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times 100(\%)$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 평가시 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15. 출연·출자금비율 (증감률)	15-1. 출연·출자금비율 $\frac{\text{출연·출자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15-2. 출연·출자금 증감률 $\frac{(\text{2014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text{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text{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times 100(\%)$ ※ 출연·출자금: 출연금(306), 출자금(502), 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통합회계	▽
	16.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frac{\text{자본시설유지비용}}{\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16-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frac{(\text{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text{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text{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times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통합회계	▽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1 - \frac{\text{인건비 결산액}}{\text{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기준액: 2013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 - \frac{\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국외여비(205-0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의정운영공동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3.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2014.7.1 기준으로 의원 수가 변경된 경우 6개월로 계산 ※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계산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 - \frac{\text{업무추진비 결산액}}{\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3. 12. 31 기준이며, 2014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2014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2013.12.31 기준으로 산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재정 효율성	20.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20-1. 행사축제경비비율(%) $\frac{\text{2014년 행사축제경비}}{\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0-2.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frac{(\text{2014년도 행사축제경비} - \text{2013년도 행사축제경비})}{\text{2013년도 행사축제경비}} \times 100(\%)$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 전국소년체전 . 전국장애인체전은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행사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일몰제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한 축제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새로 전국축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차이 점수 산정 ex) 2013년도까지 계산 제외대상 축제였다가, 2014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계산축제가 되었으나, 다시 2015년 심사에서 계산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4년도 점수 산정시= 2013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 다음 2014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2015년 점수 산정시= 2014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2015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